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응시자 유의사항

한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 TOPIK 사업단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응시생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공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응시자에게는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처리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그 시험의 무효나 취소, 2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된 당해 시험의 공고문 및 각종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시험 당일 준비물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에 한함)

신분증 미지참 또는 사본 지참 시 응시 불가

접수 시 기재한 영문 성명과 신분증 상의 영문 성명이 완전히 다를 경우 응시 불가

### 2. 시험 응시 관련

1) 입실 완료시간 전까지,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입실 완료 시간 이 후 입실 불가합니다.

#### <입실 및 퇴실 시간>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완료 시간	시작	종료	시험시간 (분)	비고
TOPIK I	1교시	듣기	09:10	09:40	11:20	40	오전
		읽기				60	
TOPIK II	1교시	듣기	12:20	12:50	14:40	60	오후
		쓰기				50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 2)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 3) 응시자는 문제지의 유형 (홀수 · 짝수)과 답안지에 마킹한 문제지 유형 (왼쪽 아래)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형 문제지, 수험번호 끝자리가 짝수일 경우, 짝수형 문제지)
- 4) 시험 시간 도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퇴실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실한 경우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성적 처리가 되지 않음)
- 5) 시험 도중 질병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복도로 나갔을 때에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복도감독관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6) TOPIKⅡ의 경우, 1교시 결시자는 2교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환불도 받을 수 없습니다
- 7) 중도퇴실자,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무효 처리 됩니다.
- 8)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 9) 시험시간 중에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되며, 소란스럽게 하여서도 안 됩니다..
- 10)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11)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합격 결정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2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답안지 작성 관련

- 1)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 듣기 시험 중에는 듣기 답안만, 읽기/쓰기 시험 중에는 읽기/쓰기 답안만 작성해야 합니다.
- 2) 듣기 평가의 경우 별도의 마킹 시간이 없습니다.
- 3)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낙서를 하거나 불필요한 표기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답안지 위·아래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4) 문제지에만 답을 쓰고 답안지에 옮기지 않으면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5) 답안지 작성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배부한 양면사인펜만을 사용합니다.
- 6)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채점 결과 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7) 듣기/읽기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굵은 펜을 사용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불완전한 마킹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8) 쓰기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얇은 부분을 사용하여 반드시 정해진 답란 안에 작성해야 하며, 정해진 답란을 벗어나거나 답란을 바꿔서 쓸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테이프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조용히 손을 들면 됩니다.
- 9) 개인이 소지한 수정테이프는 사용 가능하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0) 답안지를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답안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해당 회차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시험이 종료되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와 문제지는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에 놓고,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12) 답안 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 종료 후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문제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문제 무단 배포 금지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문제는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유출, 복제, 배포할 수 없으며 이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출, 배포한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5. 반입 금지 물품

1) 전자통신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응시자는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

2) 시험 중, 반입 금지 물품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2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 휴대전화, 디지털 시계(스마트 워치),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 노트북, Ipad 등 모든 전자기기
- 특히 소지하고 있는 모든 휴대전화는 전원을 끈 후(알람 기능 off)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 6. 부정행위자 처리 대상

사례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li> <li>.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li> <li>.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li> <li>. 제출한 전자 및 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li> </ul>	<b>해당 회차 시험 무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시자가 따르지 않는 행위</li> <li>.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로 하는 행위</li> <li>. 통신·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아이패드, PDA 등 일체)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li> <li>.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li> <li>.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나 쪽지 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li> <li>.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li> <li>. 시험 문제를 유출·배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li> <li>. 문제지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유출·배포하는 행위</li> <li>.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li> <li>. 성적증명서를 위·변조 하여 사용하는 행위</li> </ul>	<b>2년간 응시 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한 행위</li> </ul>	<b>4년간 응시 불가</b>

※ 자세한 내용은 TOPIK 홈페이지 (www.topik.go.kr)

## 7. 신원불명확자 응시 불가 (2020년도 개정)

시험 당일, 지원자 사진대장, 신분증 사진, 수험자 얼굴을 비교 후 본인 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은 수험생은 응시 불가 처리함. (퇴실)

## 8. 기타 유의 사항

- 1) 중도퇴실자,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 2)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간입니다.